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7 - 05 - 35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7. 2. 7.

주 문

1. 피심인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고, 법령,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고,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2,348건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1년이 경과한 후 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매출액				
상시 종업원 수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6.12.8.~9.)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2.8.18.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2014.8.17.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2,348건을 보유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5,869,843명의 개인정보(이름, 주소)를 파기하지도 않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도 않았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

은 2017. 1. 12.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11322호, 2012.2.17.)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10호, 2016.9.22.) 제1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

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제23조의2제1항)

피심인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고 법령,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2,348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여, 위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피심인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5,869,843명의 개인정보(이름, 주소)를 파기하지도 않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도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참고〉 피심인의 위반사항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주민등록 번호	§23의2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2,348건을 파기 하지 않은 행위
	유효 기간제	§29②	§16②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5,869,843건을 파기하지도 않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하지도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고, 법령,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고,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2,348건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1년이 경과한 후 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제1항 및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각각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	1,000	2,000	3,000
○ 법 제29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

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2항 각 위반 행위 모두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심인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과태료 가중	과태료 감경	최종 과태료
§23의2①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계				2,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에 대

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4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김 재 홍



위 원 김 석 진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